

## V. 퇴직연금 세제체계의 개정방안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목적 중 하나는 현행 퇴직금제도에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전환케 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퇴직금 관련 세제상 정년까지 근속한 근로자나 이직시 개인퇴직계좌에 퇴직일시금을 계속 이관하여 온 근로자, 또는 고액급여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가 오히려 퇴직일시금의 세액보다 높으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할만한 충분한 세제상의 유인이 주어지지 않고 있음이 Simulation결과에 의해서 밝혀졌다. 본 장에서는 Simulation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퇴직연금 세제체계 개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기본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 1. 기본방향

지금까지 주요 외국의 세제체계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상을 반영한 Simulation을 통해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또는 현행 퇴직금제도에 의해 산출된 퇴직소득에 대해 세법을 적용한 결과, 어느 것이 수혜자에게 세액과 한계세율 측면에서 유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본 연구에서 행한 실증분석용 Simulation과 동일한 사례를 설정하여 퇴직연금 관련 세제체계 개정의 기본방향을 도출한다. 퇴직일시금에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와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연금소득세를 비교 검토하기 위해, 27세에 월평균임금 1,643,178원으로 대기업에 입사한 근로자(<표 IV-6> 참조)의 사례를 살펴본다. 이 근로자는 임금인상률 5.5%와 투자수익률 6%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며, 정년인 55세부터 지급되는 퇴직연금은 예정이율 5.5%, 유지비 0.5%의 기말급 확정연금이라 가정하였다.

이 근로자가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획득하는 근속 10년 후부터 2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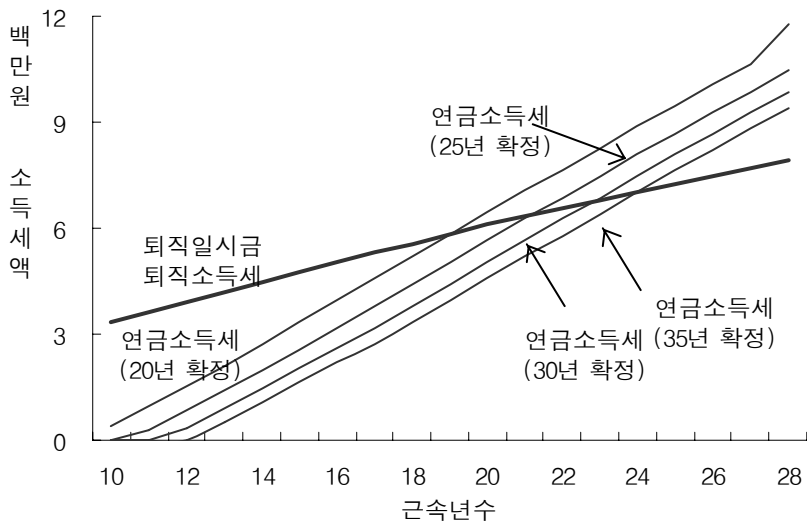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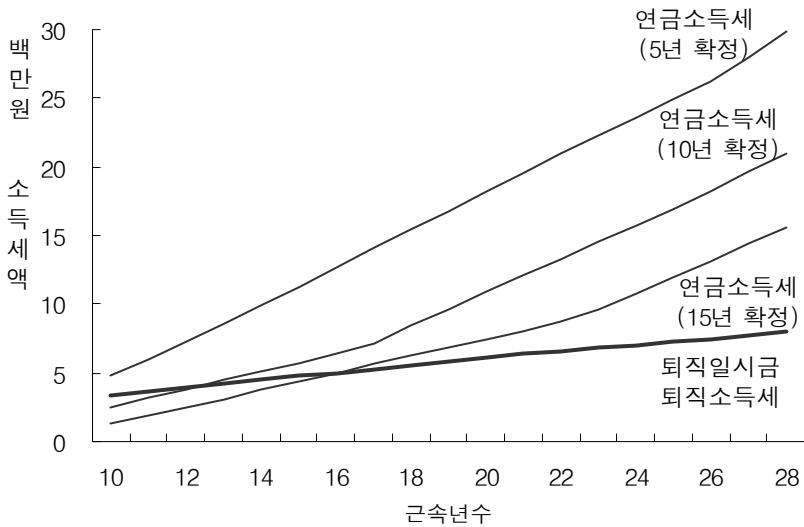
을 더 근속한 55세에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10년 근속 후 퇴직하는 경우 10년 동안 매년 1회분의 월평균임금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각출되어 운영되며, 퇴사하면 각출이 중단되고 퇴직 당시 본인의 계좌에 적립된 금액이 55세까지 운영되게 된다. 이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인 55세에 도달했을 때 퇴직일시금을 수령할 것인지 연금을 수령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퇴직일시금을 선택했을 때 이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퇴직소득세액이 <그림 V-1>의 퇴직일시금 퇴직소득세 선에 근속년수 별로 나타나 있다. 만일 이 근로자가 퇴직일시금 대신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동안 확정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지급기간 동안 부담하여야 할 연금소득세의 55세 기준 현재가치가 각 연금지급기간별 선으로 나타나 있다.

<그림 V-1>을 보면 근속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일시금액은 증가되지만 퇴직일시금 소득세제에 적용되는 연분연승법의 영향으로 인해, 그 증가 정도가 연금소득세에 비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근로자가 5년에서 35년의 확정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속년수가 늘어나면서 퇴직일시금도 증가하여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액도 함께 증가한다. 연금소득세는 연분연승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일시금이 증가하면 연금소득세액을 크게 증가시킨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Simulation 결과와 종합하면, 현행 세제체계 하에서는 근속년수가 길수록 연금소득세가 퇴직소득세에 비하여 불리하므로 젊은 계층일수록 퇴직연금을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이 결과는 현재시점에서 근속년수가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장년층일 경우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이유가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그림 V-1> 근속년수별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비교



연금수령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을 낮출 수 있으므로 현행 연금소득세제상 조세절감이 가능하다. <그림 V

-1>에서 연금수령기간이 길수록 연금소득세가 퇴직소득세보다 유리한 구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연금수령기간을 평균여명보다 장기화하는 경우 퇴직연금의 일부가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유족에게 상속되므로 이에 대한 제한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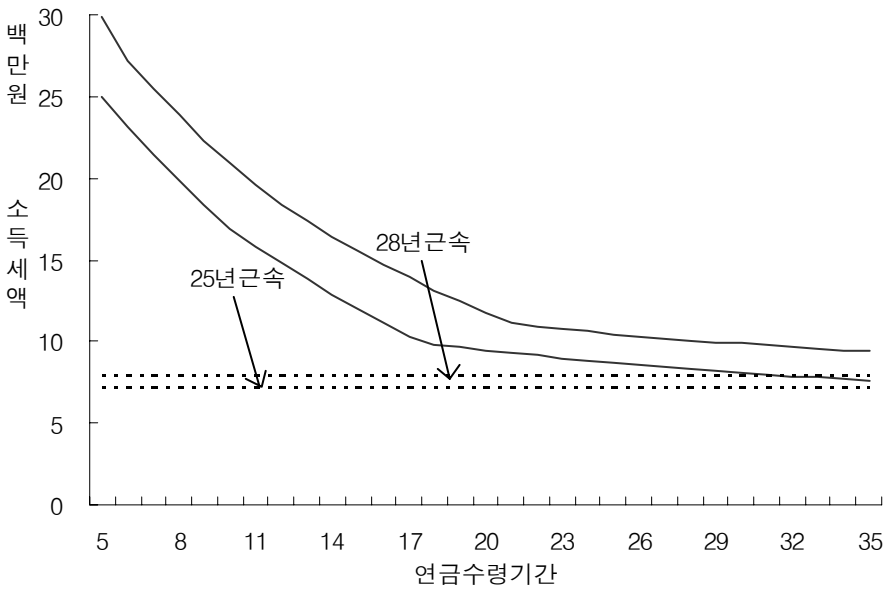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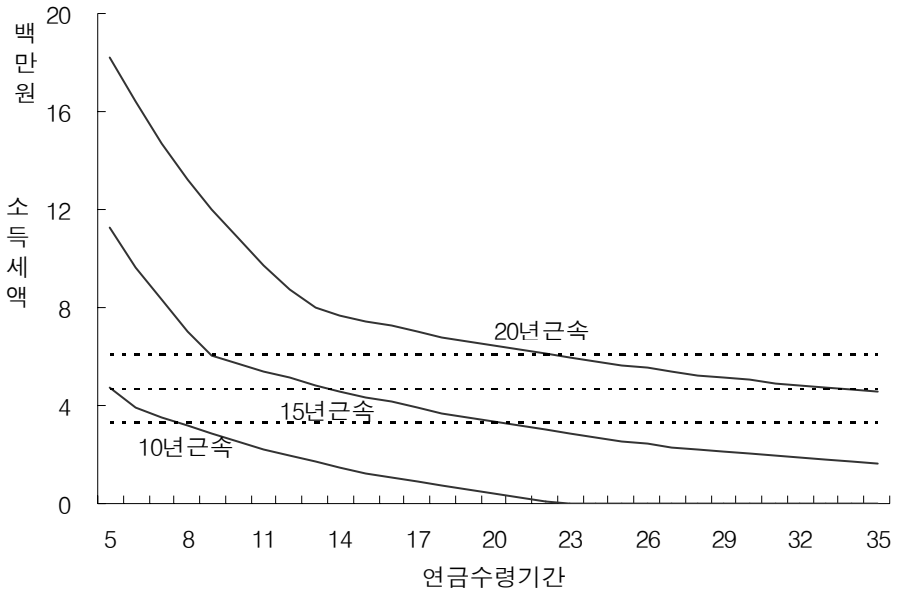
<그림 V-2>은 10년, 15년, 20년, 25년, 28년의 각 근속년수별로 연금수령기간에 따른 퇴직소득세액과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점선으로 표시된 평행선은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일시금 소득세액을 나타내며, 실선으로 표시된 선은 각 근속기간별로 연금수령기간을 점차 장기화하였을 경우 연금소득세액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10년 근속자의 경우 연금수령기간을 8년 이상으로 하여야만 연금소득세 현재가치를 퇴직소득세보다 낮출 수 있다. 근속년수가 증가하면서 연금수령기간을 장기로 가져가면 연금소득세 현재가치를 퇴직소득세보다 낮출 수 있다. 15년 근속자의 경우에는 연금수령기간을 14년 이상으로 하여야만 하며, 20년 근속자는 22년, 25년 근속자부터는 연금수령기간을 35년 이상으로 하여도 퇴직소득세 보다 더 많은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근속기간이 긴 근로자가 현행 연금소득세제 하에서는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것이 퇴직일시금보다 불리한 것을 인식하여 연금수령기간을 길게 가져갈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노후보장용 소득이 상속재산으로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령기간이 길 경우, 국민연금 수령기간과 중복되어 다시 소득세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에 비추어 현행 퇴직연금이 입법 예고된 법안의 취지에 비추어 5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가교연금으로 기능하는데 적절한 세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V-2> 연금수령기간별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비교



## 2. 세부 방안

이제 퇴직연금 세제체계의 기본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방안들을 실증분석결과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제시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퇴직연금세제와 관련한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퇴직소득세제 및 연금소득세제와 직결된 방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제시한다.

### 가. 퇴직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

현행 퇴직일시금 세제는 퇴직급여액의 50%를 퇴직급여비례공제로 공제하고, 다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누진적으로 공제하고 있다. 퇴직일시금은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근속기간 중의 근로소득이 퇴직시까지 이연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급여비례공제와 근속년수공제가 반영된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연평균산출세액을 구한 후 이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하여 최종세액이 계산된다. 따라서 퇴직일시금에는 최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근속년수 연분연승법). 이에 반해 연금소득은 공제액이 퇴직일시금에 비해 훨씬 적어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퇴직일시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Simulation추정과정에서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산출시 적용된 한계세율을 보면, 퇴직소득세는 모두 9%의 최저한계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연금소득세는 수급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한계세율이 18%인 경우도 있다 (<표 V-1>부터 <표 V-2>까지 참조).

10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표 V-1> 소득계층별 한계세율비교(확정급여형)

구분	퇴직소득세	확정연금				종신연금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1분위	9%	-	-	-	-	-	-
2분위		9%	-	-	-	-	-
3분위			9%	-	-	-	-
4분위				-	-	-	-
5분위			9%	-	-	-	-
6분위		-		-	-	-	
7분위		18%	9%	9%	9%	-	-
8분위						-	-
9분위			-	-	-	9%	-
10분위			-	18%	-	-	9%

주: ‘-’ 는 세액이 0임을 의미.

<표 V-2> 소득계층별 한계세율비교(확정기여형)

구분	퇴직소득세	확정연금				종신연금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1분위	9%	-	-	-	-	-	-
2분위		9%	-	-	-	-	-
3분위			9%	-	-	-	-
4분위				-	-	-	-
5분위			9%	-	-	-	-
6분위		-		-	-	-	
7분위		18%	9%	9%	9%	-	-
8분위						-	-
9분위			-	-	-	9%	9%
10분위			-	18%	-	-	-

<표 V-3> 연령별 한계세율비교(확정급여형)

규모	연령	퇴직 소득세	연금소득세					
			확정연금				종신연금 (12년 확정지급)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대기업	27	9%	18%	9%	9%	9%	9%	9%
	35							
	40							
중소기업	27	9%	18%	9%	9%	9%	9%	9%
	35							-
	40							-

<표 V-4> 연령별 한계세율비교(확정기여형)

규모	연령	퇴직 소득세	연금소득세					
			확정연금				종신연금 (12년 확정지급)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대기업	27	9%	18%	18%	18%	9%	9%	9%
	35			9%	9%			
	40			9%	-			
중소기업	27	9%	18%	18%	18%	9%	9%	9%
	35			9%	9%			
	40			9%	9%			

<표 V-5> 개인퇴직계좌 (IRA) 한계세율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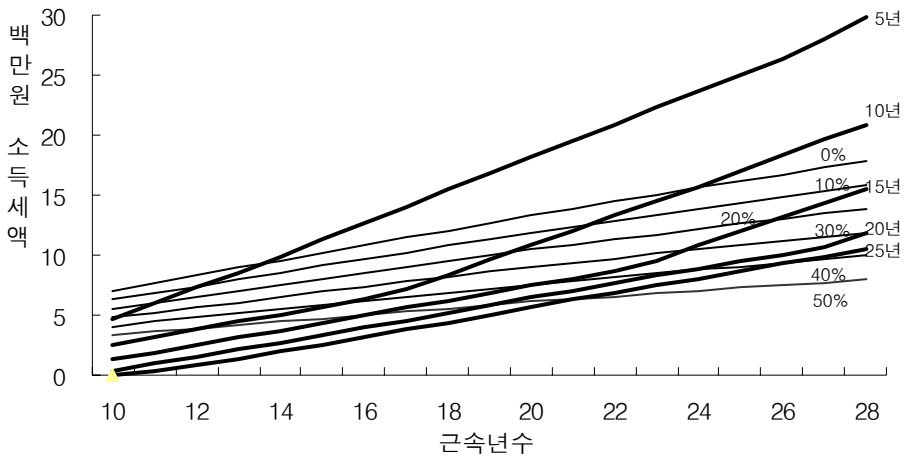
규모	연령	퇴직 소득세	연금소득세					
			확정연금				종신연금 (12년 확정지급)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대기업	27	9%	18%	18%	9%	9%	9%	9%
	35			9%				
	40			-				
중소기업	27	9%	18%	18%	9%	9%	9%	9%
	35			9%				
	40			9%				



따라서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시킬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도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퇴직일시금 소득세제에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금액의 점진적인 축소 방안을 제시한다.

퇴직소득공제는 퇴직급여액의 50%를 공제해 주는 퇴직급여비례공제와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누진적으로 공제해주는 근속연수 공제(<표 II-1> 참조)로 나뉜다. 퇴직금이 후불임금 성격이 있다고 판정한 대법원 판결(1973. 10.10선고, 73다278 판결)에 의하면, 퇴직급여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이 과세이연된 것이므로 근속연수공제는 이론적으로 도입이 타당하지만 퇴직급여비례공제제도는 세액을 크게 감액시켜주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속연수공제보다는 퇴직급여비례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그림 V-3> 퇴직급여비례공제 축소



<그림 V-3>은 <그림 V-1>과 동일한 가정 하에서 근속연수와 연금수급기간에 따른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를 보여주고 있다. 가산 실선으로 표시된 퇴직소득세액은 X-축의 근속연수에 따라 55세에

퇴직일시금을 받지만 퇴직소득세액을 퇴직급여비례공제를 현행 제도(50% 공제)부터 폐지하는 경우(0%)를 구분하여 계산한 것이다.

굵은 실선으로 표시된 연금소득세액 선은 X-축의 근속년수에 따라 55세 말 시점부터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연금소득세액이 연금수급기간을 5년에서 25년까지 5년씩 연장시켰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근로자가 정년까지 근속하고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이 지급되기 전의 시점인 55세부터 65세까지 10년간 지급되는 가교연금으로 가정한다면 현재 퇴직급여액의 50%로 인정되는 퇴직급여비례공제를 없애면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중 연금을 선택할 유인이 상당히 높아짐을 <그림 V-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퇴직급여비례공제를 폐지할 경우에는 근속년수가 24년 미만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소득세가 연금소득세보다 많아져서 퇴직연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만일 10년 이상 지급되는 퇴직연금을 선택하면, 연금소득세액이 퇴직소득세액보다 훨씬 작아서 퇴직급여비례공제제도의 폐지가 퇴직연금에 대한 선호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한편,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의 보완연금으로 간주하더라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지급기간을 충분히 장기화하면 퇴직급여비례공제를 현재의 절반수준인 20~30% 정도로 줄여도 퇴직연금 선호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그림 V-3>에서 확인해보면, 연금지급기간별 소득세를 나타내는 굵은 실선 중 25년 선을 보면, 퇴직급여비례공제 수준을 30%로 축소해도 근속년수가 28년에 이르더라도 연금소득세액이 퇴직일시금소득세액보다 항상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유형과 무관하게 연금지급기간이 장기화되면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된다.

이상의 실증결과에서 퇴직급여비례공제제도의 폐지 내지는 비율 축소 가 상당히 현실적인 방안임을 알 수 있다.<sup>1)</sup>

1) 물론 <그림 V-3>에 적용된 임금관련 가정과 투자수익률이 변할 경우, 이

다만, 이러한 조치는 퇴직일시금을 선호하고 있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조세저항이 예상되므로 현행 법정퇴직금제도에 따라 법인세법상 기업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인정 한도를 점차 축소하여 법정퇴직금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도 시도해볼만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또 다른 방안으로 연금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퇴직금 성격에 대한 대법원 판결(1973. 10.10선고, 73다278 판결)에서 퇴직소득을 후불임금으로 간주하였다는 것은 퇴직급여가 근로소득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금소득을 소득세법상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 근로소득으로 합산시켜 과세시키자는 것이다. 이 방안은 과세표준을 증가시켜 세액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퇴직소득 성격을 충실하게 적용하는 방법이다. 또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및 근로소득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연금소득세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나. 연금소득 공제금액 인상

퇴직연금소득은 근속기간 중 획득한 근로소의 일부를 노후를 위해 미래로 이연한 것이므로 근로소득 못지않은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연금소득 공제액은 근로소득공제에 비해 공제한도와 공제율이 낮으므로 연금소득 공제금액의 한도를 증액시키거나 공제율을 올리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V-6>에서와 같이 2004년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공제되는 소득의 범위가 넓고 공제액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 반해, 연금소득공제는 공제되는 소득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공제한도 역시 연간 6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표 III-6> 참조).

---

러한 결론이 바뀔 수 있으나, 그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V-6> 근로소득 공제금액(2004년 귀속기준)

총근로소득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전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 +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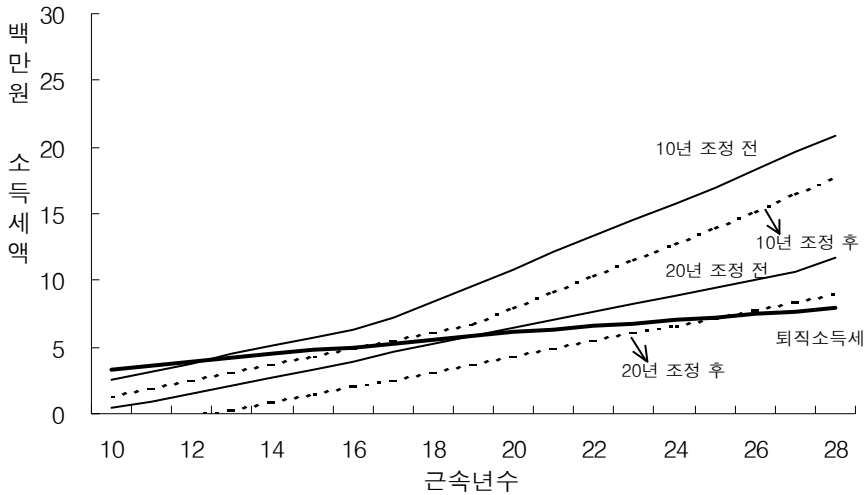
더구나 연금소득세제는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소득에도 적용되므로 공제되는 소득의 범위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각각 40%, 20%로 가정하면 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경우 퇴직이후의 소득은 퇴직이전 근로소득의 60%가 될 것이다. 연금소득 공제금액 수준도 여기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범위의 60% 정도에서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림 V-4>는 <표 V-6>의 근로소득 공제금액 범위를 60%로 하향조정하여 연금소득세 계산에 적용한 것이다. 가는 실선은 현행 연금소득공제로 계산한 연금소득세(연금수급기간 10년 및 20년) 선이고, 점선은 근로소득공제금액의 60%를 연금소득공제로 하여 계산한 연금소득세선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공제금액 확대로 인해 점선이 실선 아래쪽으로 이동하였다. 10년 조정 전·후의 연금소득세 선을 비교해보면,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지급 개시까지 가교연금으로 기능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는 연금소득공제를 근로소득공제의 60%까지로 확대해도 근속년수가 길수록 연금소득세액이 퇴직소득세액보다 많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의 보완연금으로서 장기간(예, 20년) 수급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가 퇴직소득세 보다 낮으므로 연금소득공제액의 상향조정방법이 세제상 유인책으로 기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만, 이 경우에는 연금수급액이 낮아 지출수준에 맞추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림 V-4> 연금소득공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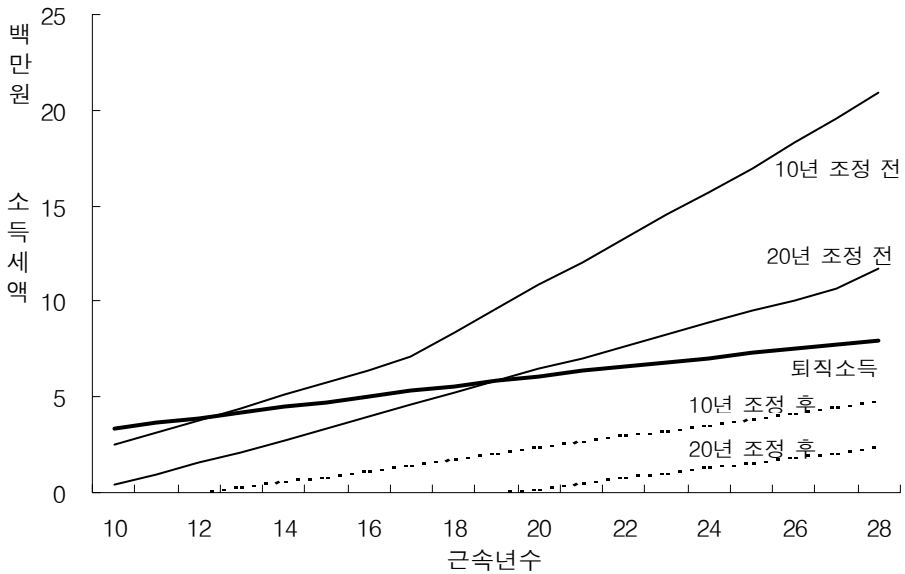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 퇴직일시금의 퇴직소득비례공제의 경우처럼 연금소득의 50%를 공제하는 “연금소득비례공제” 신설을 제안한다. 퇴직연금 적립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과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수령방법의 차이일 뿐으로 소득의 원천은 퇴직급여소득이다. 현재 법정퇴직금제의 퇴직일시금에 적용되는 퇴직급여비례공제를 퇴직연금에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이다.

<그림 V-5>는 퇴직소득의 경우와 같이 연금소득의 50%를 연금소득비례공제로 공제한 후, 연금소득공제와 표준공제를 적용한 결과이다. 가는 실선으로 표시된 연금소득세(연금수급기간 10년 및 20년)선이 연금소득공제 범위 확대에 의해 각각 하향 조정되어 점선으로 표시되어

아래쪽으로 대폭 이동하였다. 이로써 연금소득비례공제제도는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를 퇴직일시금의 퇴직소득세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만들어 퇴직연금으로 전환시키기에 충분한 유인을 제공해준다.

<그림 V-5> 연금소득비례공제 신설



그러나 현행 체제처럼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특별공제를 비롯한 각종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연금소득비례공제제도가 퇴직소득비례공제제도가 형평성 측면에서 차별적일 수 있다.

연금소득공제의 불충분성을 해결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 고령자들의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인 의료비, 주거비 등에 대한 공제를 상향조정 또는 신설하는 것이다. 즉, 현행 의료비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거나, 주거비 지출에 대한 추가적인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다. 퇴직관련 소득세제의 일원화

퇴직연금은 퇴직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퇴직 이후 일정기간 동안 수령하는 것이므로 세제 체계상 연간 600만원 이상의 연금소득을 퇴직소득과 분리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에는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연금소득도 퇴직소득세제와 동일한 세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것은 외국의 세제체계 중 영국사례와 유사한 방법이다. 영국은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시금과 연금을 혼합하여 선택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퇴직급여 세제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일시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지급형태로 추정된다. 따라서 일시금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비과세 일시금과 과세대상 연금의 혼합 체계로 수용하여 현행 우리나라 퇴직연금세제의 문제점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사례의 운용취지를 도입하려면 퇴직일시금 위주의 현행 퇴직소득세제에 퇴직연금이 수용되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퇴직연금소득을 종합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현재의 퇴직소득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퇴직연금의 적립금도 퇴직일시금과 동일한 취지로 퇴직급여비례공제와 근속연수공제제도를 허용하고, 이에 따른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 중 과세비율에 해당되는 부분만 과세하는 방법이다.

<표 V-7>은 <그림 V-1>의 사례에서 근속연수가 20년인 대기업 근로자의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를 일원화하여 산출한 것이다. 퇴직소득세액은 현행 세제에 따라 계산한 것이고, 연금소득세액은 다음과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27세부터 20년간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 수급개시시점인 55세에 일시금을 지급받으면 퇴직일시금이 159,911,410원이 된다. 이를 연금으로 전환하여 55세말부터 10년 유기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은 21,109,542원이 된다. 이 연금액에 퇴직일시금과 동일한 퇴직소득공제비율 57.5% (=퇴직급여비례공제

50% + 근속년수 비례공제 7.5%)를 적용한 결과 과세표준이 8,970,678원이 되며, 과세표준에 9%를 적용하면 연간 807,361원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를 현가로 환산하면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는 6,085,586원이 된다.

이를 일반화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V-6>로써 근속연수에 따라 5년, 10년 또는 15년 이상의 유기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의 현가가 비교되어 있다.

<표 V-7> 퇴직관련 소득세제의 일원화 사례(근속연수 20년)

(단위 : 원)

퇴직연금 수급기간	퇴직일시금	퇴직급여 비례공제	근속년수 비례공제	퇴직소득 공제비율	퇴직소득세
5년	159,911,410	79,955,705	12,000,000	57.5%	6,116,013
10년	159,911,410	79,955,705	12,000,000	57.5%	6,116,013
15년	159,911,410	79,955,705	12,000,000	57.5%	6,116,013
20년	159,911,410	79,955,705	12,000,000	57.5%	6,116,013
25년	159,911,410	79,955,705	12,000,000	57.5%	6,116,013

퇴직연금 수급기간	연금액	연금소득 공제비율	과세표준	연금소득세	연금소득세 현재 가치
5년	37,261,178	57.5%	15,834,453	1,950,201	8,327,915
10년	21,109,542	57.5%	8,970,678	807,361	6,085,586
15년	15,852,010	57.5%	6,736,446	606,280	6,085,586
20년	13,314,706	57.5%	5,658,197	495,761	6,085,586
25년	11,646,176	57.5%	4,949,141	453,676	6,085,5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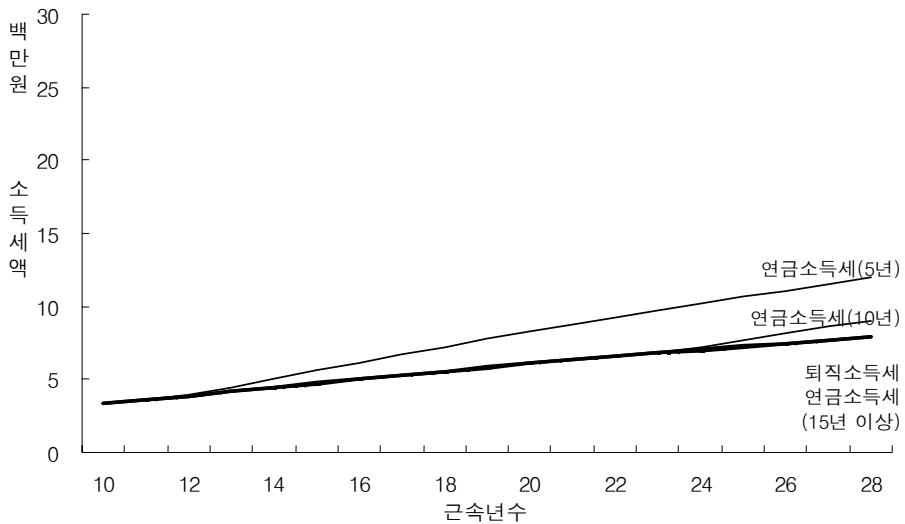
굵은 실선이 퇴직일시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이며, 얇은 실선으로 나타난 것이 각 연금수급기간별로 부과되는 연금소득세의 현가이다.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체계를 일원화하였기 때문에 연금수급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연금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11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있다. 그러나 5년이나 10년 유기연금의 경우 근속연수 증가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이 증가함으로써, 매년 연금수령액의 과세표준이 한계세율(9%→18%)을 넘는 구간인 근속연수 12년과 24년을 지나면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변하지 않는 구간까지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에 거의 유사한 소득세가 부과되게 된다. 다만, 퇴직일시금을 수령하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되는 경우 운영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므로 합리적인 근로자라면 퇴직일시금 대신 퇴직연금 수령을 선택하게 되고, 연금수급기간도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액에 따라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그림 V-6> 퇴직관련 소득세제 일원화



퇴직관련소득 일원화 체계하에서 퇴직연금적립금액 중 비과세되는 부분에 한해 퇴직일시금 지급도 고려해볼 수 있다. 55세 이후 퇴직시점에 일시금이 필요하나 일부는 연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본인의 선

택에 따라 적립금액의 50%까지를 비과세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향후 수령하는 연금은 비과세일시금을 이미 지급받은 정도만큼 비과세비율을 하향조정하여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앞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근속연수가 20년인 대기업 근로자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근로자는 퇴직연금 수급자격 발생시점인 55세에 159,911,410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경우 공제비율은 57.5%가 된다(<표 V-7> 참조). 이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 중 25%를 비과세퇴직일시금으로 받고 75%를 연금으로 수령한 경우에 선택한 연금수급기간별 세부담의 현재가치를 알 수 있다.

이 근로자가 10년 유기연금을 선택한 경우, 매년 15,832,157원의 연금을 받게 되며, 55세에 이미 퇴직연금 적립액의 25%를 비과세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하였기 때문에 연금소득공제비율은 57.5%에서 32.5%로 줄어들고 과세비율은 67.5%가 된다.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가 <표 V-7>에서 보다는 다소 많지만 현행 세제 하에서 차이보다는 훨씬 작다. 이 방안은 퇴직급여 관련 소득세제를 일원화 경우보다 연금소득세제의 현재가치가 약간 많지만 근로자들의 일시금 선호 성향을 반영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V-8> 비과세퇴직일시금 지급

(단위 : 원)

수급기간	비과세 일시금	연금액	연금소득 공제비율	과세표준	연금 소득세	연금소득세 현재 가치
5년	39,977,853	27,945,884	32.5%	18,862,310	2,495,216	10,655,282
10년	39,977,853	15,832,157	32.5%	10,686,048	1,023,489	7,714,674
15년	39,977,853	11,889,007	32.5%	8,024,586	722,213	7,249,269
20년	39,977,853	9,986,030	32.5%	6,740,155	606,614	7,249,269
25년	39,977,853	8,896,487	32.5%	6,004,759	540,428	7,249,269

&lt;표 V-9&gt; 비과세일시금 비율별 소득세 비교

(단위 : 원)

수급 기간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현재가치		
		50% 연금	75% 연금	100% 연금
5년	6,116,013	9,402,542	10,655,282	8,327,915
10년	6,116,013	6,622,899	7,714,674	6,085,586
15년	6,116,013	6,622,899	7,249,269	6,085,586
20년	6,116,013	6,622,899	7,249,269	6,085,586
25년	6,116,013	6,622,899	7,249,269	6,085,586

연금수급권 발생연령 연령인 55세 시점에서 비과세 일시금을 퇴직연금 적립금액의 0%(전액 연금), 25%, 50%까지 받는 경우를 비교한다 (<표 V-9> 참조). 이 경우 퇴직급여공제비율은 각각 57.5%, 32.5%, 7.5%가 된다. 따라서 적용비율은 퇴직연금 적립금 중 일정비율을 비과세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의 연금소득세 현재가치는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보다 많아지게 된다. 본 연구는 일정한 가정 하에서 Simulation한 결과를 제시하기 때문에 적정 퇴직일시금액을 논의하지는 않는다. 비과세일시금이 퇴직당시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액과 연금수급기간, 퇴직연금 수급자격발생시점에서의 일시금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전액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지만, 근로자의 노후생활자금 형성과 일시금 수요의 동시 충족을 위해서 도입해볼 만하다.

이외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중도 대출을 허용하되, 이를 비과세로 하고 미상환을 추후 연금수령액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연금소득세액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